##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1. 09. 23 개 정 2021. 12. 21 개 정 2022. 12. 29 [노사협력부 042-600-81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사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직원의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대부하는 자금(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기혼자'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대부대상자격) 대부대상자는 대부시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정원 내 직원으로 한다. 제5조(대부대상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휴직자(단, 공상휴직자는 제외)
-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대부대상자로 확정된 후 포기할 시 대부대상자 확정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4.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채권확보가 어려운 자
- 5. 급여가압류 직원. 단, 가압류 해제시 대부 가능
- 6. 대부금이 보증보험으로 회수된 직원은 영구제외

제6조(대부금 재원) 대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대부한다. 단, 대부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시기의 조정 및 대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 제7조(대부대상자 선정) ① 대부금의 대부자 선정은 대부심사표(별표1)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단, 대부신청액이 대부예정액에 미달할 경우 대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부양가족의 범위는 세대주인 직원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로 한다. 단,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는 6개월 이상 동거한 자에 한하며, 세대주가 아닌 기혼직원은 세대주에 준한다.
  - ③ 대부기준일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④ 대부수혜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최초 대부신청자는 대부금 기수혜자를 우선하여 대부한다.

- 〈개정 2021.12.21〉
- ⑤ (삭제)<개정 2021.12.21>
- ⑥ 대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부시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내용으로 확인하다.
- ⑦ 동점자의 경우 무주택자,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직급, 연장자순으로 한다.
- ⑧ 일반사택 입주직원의 경우 제1항부터 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후순위자로 하며, 일반사택 입주직원 간에는 대부심사표(별표1)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제8조(대부관련 서류) ① 대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부 신청액이 대부 예정액에 미달하여 대상자 선별이 불요할 경우 제1호의 서류 제출로 갈음한다.
  -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신청서(별표2)
  -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 3. 대부기준일 현재 무주택임을 증빙하는 과세증명서
  - 4. 무주택 확인각서(별표3)(무주택자에 한함)
  - ② 대부금 수령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 청약서는 보험사 전산 등록시 제외할 수 있다.
  -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차용증서(별표4)
  - 2. 보증보험 청약서
  - ③ 급여가압류 및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대부금액)** ① 대부금액의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하며, 1천만원 단위로 대부한다. <개정 2021.12.21>
  - 1. (삭제)<개정 2021.12.21>
  - 2. (삭제)<개정 2021.12.21>
  - 3. (삭제)<개정 2021.12.21>
  - 4. (삭제)<개정 2021.12.21>
  - ② 공사 내 부부직원의 대부금액은 각 2천만원으로 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2021.12.21>
  - ③ (삭제)<개정 2021.12.21>
  - ④ (삭제)<개정 2021.12.21>
- 제10조(채권확보) ① 대부금에 대한 채권확보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 ②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대부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고, 보증보험료는 대부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1조(상환조건) ① 대부금액 규모에 따른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2천만원 대부자 : 1년 거치 10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개정 2021.12.21>
  - 2. 1천만원 대부자 : 1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개정 2021.12.21>
  - ② 기 대부직원이 총 대부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부받을 경우에는 추가 대부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거치기간은 대부자가 원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균등분할 상환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한다.
- ⑤ 휴직자는 매월 급여일에 개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자율) ① 대부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한다.〈개정 2022.12.29〉
  - ② 대부금의 이자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도상환) ① 대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을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 1. 허위서류 제출로 대부받은 경우
  - 2. 본인이 일시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 3.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중도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복지기금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 이 기간 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③ 대부자 희망에 의해 일부 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상환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부금 잔액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급여가압류의 경우
  - 2.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3. 휴직중인 직원이 분할상환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제14조(퇴직시 환수) ① 대부금 미상환액이 있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까지 미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퇴직인사의 소급발령으로 인한 퇴직일 계산은 인사발령일을 퇴직일로 본다.
- 제15조(연체료) ① 제13조, 제14조의 상환사유 발생시 상환기한 익일부터 대부금 잔액에 대하여 한국은행 고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서류로 대부 받음)의 경우에는 대부일자로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 ② 이자는 일할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 ③ 제3항의 이자계산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구 지침 「사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지침」의 분리 개정에 따라, 「사택운영지침」의 개정시행일('21. 8. 26) 이후부터 이 지침 시행일 전 '생활안정자금' 부분의 적용은 구 지침 「사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의 개정사항은 2021.11.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대부심사표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사일자: 년 월 일(사번: )

항 목	배점기준	산출내역	상한점수	결정점수
직 급	■ 1직급: 10점 ■ 2직급: 8점 ■ 3직급: 6점 ■ 4직급: 4점 ■ 5직급이하: 2점	좌 동	10점	점
근속연수	■ 1년당 : 5점 ■ 1개월당 : 0.4점	근속년수 년 월	25점	점
결혼여부	■ 기혼자 : 20점 ■ 미혼자 : 10점	기혼자( )(20점) 미혼자( )(10점)	20점	점
부양가족	■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1인당 10점	가족수 ( )명	30점	점
무주택자	■ 대부기준일 현재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15점	무주택자 ( ) (15점) 유주택자 ( ) (0점)	15점	점
	총계	100점	점	

#### ※ 주 1. 근속기간 계산시 월미만 단수는 절사함

- 2. 부양가족의 범위는 세대주인 직원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로 한다. 단,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는 6개월이상 동거한 자에 한하며, 세대주가 아닌 기혼 여직원은 세대주에 준한다.
- 3. 기혼자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직계 비속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작성자	:	(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신청서

관	담	당	부(팀) 장	부서장
리				
부				
서				

1. 신청자 인	!적사항	
■ 소	속 :	■ 사 번 :
■ 직	급:	■ 입 사 일 자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현거주	지주소 :	■ 신 청 금 액:

### 2. 대부심사항목 기재사항

항 목	기 준	기 재 란
결혼유무	■ 대부기준일 현재 기혼자인 직원  * 기혼자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 한함	기혼자 ( ) 미혼자 (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의 범위는 세대주인 직원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로 한다. 단, 직계존속 및 처(시)부모는 6개월이상 동거한 자에 한하며, 세대주가 아닌 기혼직원은 세대주에 준한다.	가족수 ( )명
무주택자	■ 대부기준일 현재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 해당자 첨부서류 제출	무주택자( ) 유주택자( )
신규대부 신 청 자	■ 일반사택 입주자 및 본인사정에 의한 자금상환자 또는 지사 내칙에 의거 일반사택에 순환입주한자 및 대부금을 추가로 신청한 자가 아닌 경우	신규신청( ) 기수혜자( )

위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대부기준일 현재 주소지 및 부양가족 확인용)
  - 2. 무주택자는 무주택 확인 각서(별표3) 및 증빙자료 제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표 3)

# 무주택 확인 각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대부기준일 현재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대부기준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차용증서

•	切下で	[보.			
ı	차 용	자 :			
ı	소	속:			
ı	사	번 :			
I	성	명 :			
•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영수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제1조(원리금상환) ① 원금은 ( )년 거치후 ( )년동안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겠습니다.

② 월이자는 대부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 지침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매월 급여수령시 상환하겠습니다.

제2조(자금사용) 본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3조(채무의 변제) ① 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 1. 상환기간 도래시
- 2.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제5조에서 정한 대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대부금이 제1항 제2호에 의거 환수될 때에는 본인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를 납부하겠습니다.

제4조(보증보험금 청구) 본인은 제11조(상환조건)에서 정한 대부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미상환 차용금을 징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상계처리)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완제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때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모든 금전에서 미변제액을 임의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합의관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용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제7조(계좌입금 의뢰) 본인의 대부금을 다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기 관	입 금 계 좌			<b>ルフス</b>
	지 점 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 송금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함.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사 번:

위 본인 (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장 귀하